



# 가 정 통 신 문

(지필평가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바른 **인성**으로 펼치는 **미래**,  
함께 **성장**하는 **인제고등학교**

교육과정부

☎ 422-6681

학부모님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4학년도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지필평가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1. 결시 사유별 인정 비율

구분(인정비율)	인정 사유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시</li> <li>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li> <li>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li> <li>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출결상황 관리에서 명시한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li> <li>「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li> <li>「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의 결시</li> <li>「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중 결시</li> <li>「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li> <li>「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li> <li>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시한 경우</li> </ul>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으로 인한 결시(결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li> <li>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시</li> <li>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시(증빙자료 첨부)</li> </ul>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li> <li>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결시한 경우(학생 인권 보호에 유의)</li> <li>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혐조자의 점수 부여</li> <li>학업중단 숙려기간과 지필평가 기간이 중복되어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li> <li>「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한 결시의 경우</li> <li>「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제2호에 의한 보호관찰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결시</li> <li>시·도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li> <li>「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학생이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단,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된 학생이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시)</li> <li>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li> <li>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로 인한 결시</li> <li>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 대안교육으로 인한 결시</li> <li>상급학교 진학시험, 특성화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 학생의 입사 시험의 경우 해당일에 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li> <li>징계로 인한 결시</li> <li>그 밖에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결시 사유별 인정비율</li> </ul>
해당학년 학생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 (최하점 - 1점) 으로 부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인정 결시</li> </ul>

## 2. 인정점 부여 방법

- 1) 결시생 인정점 부여를 위한 기준 점수는 해당 학기 내 동일 과목의 성적이 있는 경우 그 성적을 기준 점수로 해당 과목의 '평균점수 비율(전입생제외)'을 적용하여 인정점을 산출한다.

$$\text{응시(기준)고사 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응시(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결시 사유별 인정비율}$$

예시) 중간고사에서 70점을 받은 '갑'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결시인 경우  
(단, 해당 과목 중간고사 평균 : 50점, 기말고사 평균 60점)

$$\text{중간고사 70점} \times \frac{\text{기말고사 평균 60점}}{\text{중간고사 평균 50점}} \times 80\% = 84점 \times 0.8 = 67.2점$$

- 2) 해당 학기에서 시행한 지필평가를 모두 결시(미인정 결시 제외)하여 기준 점수가 없는 경우, 해당 학생의 수행평가 석차백분율을 활용하여 기준 점수로 활용한다.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석차를 활용한다.)

해당 학생의 수행평가 석차 백분율 계산 후, 지필고사에서 해당 석차 백분율에 해당하는 학생의 지필고사 점수  $\times$  결시 사유별 인정비율

예시) 수행평가 성적이 해당 과목 수강생 100명 중 8등(동점자 5명)인 '을'학생이 중간고사 공결, 기말고사 병결인 경우(단, 중간고사 석차 백분율 10%인 학생이 70점, 기말고사 석차 백분율 10%인 학생이 80점을 받은 경우)

1) '을' 학생의 수행평가의 중간석차는  $8 + \frac{5-1}{2} = 10$  등

2) '을'학생의 수행평가의 석차백분율은  $\frac{10}{100} = 0.1$  (10%)

3) '을'학생의 중간고사 점수는 70점 $\times$ 100%=70점, 기말고사 점수는 80점 $\times$ 80%=64점

2024. 4. 22.

인 제 고 등 학 교 장